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1112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조선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김민식

변론 종결 2021. 1. 15

판결 선고 2021.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173,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이고, 피고는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4. 6. 28.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G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3:55경 위 I 앞 삼거리에 이르러 수색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원고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J의 오른쪽 다리를 원고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골목길 가장자리에 피고 차량이 주차 중이었는데, J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원고 택시와 피고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결국 우측대퇴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4. 8. 20. 부터 2017. 6. 23. 까지 J측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407,677,238원¹⁾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J은 이 사건 골목길 가운데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J의 다리가 피고 차량에 끼이는 바람에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불법 주차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J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택시 운전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J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제금의 지급으로 피고 측을 공동면책하게 한 원고에게 피고 측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부근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주차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폭 6m미만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른바 이면도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주차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택시 운전자인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인 J을 발견하고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 택시는 J을 충격하고서도 더 진행하여 피고 차량까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현경

1)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319만 원은 제외.